

## 외화증권매매거래계좌설정약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案)	비고
<p>&lt;신 설&gt;</p>	<p><b>제3조(위탁증거금)</b> 고객은 해외주식 매매를 위탁함에 있어 &lt;별첨&gt;에서 정하는 증거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p>	<p>해외주식 미수거래 서비스 도입에 따른 위탁증거금 항목 추가</p>
<p><b>제3조(결제일)</b> ① ~ ② 생략 &lt;신 설&gt;</p>	<p><b>제4조(결제일)</b>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lt;별첨&gt;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결제 지연에 따라 매도증권 인출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현지 결제 지연이 해당 종목 또는 거래 상대방의 파산 또는 상장폐지 등이 아닌 단순한 국내와 상이한 현지 제도/시스템에 따라 발생하는 경우 매도증권 인출 전에도 회사는 고객에 대한 원활한 결제이행을 위해 매도대금을 입금할 수 있다. 단, 제2조 제5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p>	<p>해외주식 결제 관련 유의사항 추가 (결제자금 선입금처리)</p>
<p><b>제4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b> ① 고객이 결제기일 내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의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p>	<p><b>제5조(결제불이행시의 처리)</b> ① 고객이 결제기일 내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해외에서의 매수의 경우에는 다음다음 영업일)에 현금 또는 동일 내용의 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부족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수증권 또는 매도대금, 그 밖의 고객을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증권의 순으로 필요한 수량을 처분하여 임의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가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lt;별첨&gt;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며, 고객을 위하여 점유하고 있는 그 밖에 증권의</p>	<p>반대매매 내용 추가, 대상 수량 및 가격 산정 방법 내용 추가, 3조 신설로 번호 변경</p>

	처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순서에 의한다. ② ~ ④ 생략	
제5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 ③ 생략	제6조(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 ③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6조(환전 및 송금 등) 1. ~ 7. 생략	제7조(환전 및 송금 등) 1. ~ 7.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7조(외화증권의 보관 및 명의 등) ① ~ ② 생략	제8조(외화증권의 보관 및 명의 등) ① ~ ②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8조(권리행사) 1. ~ 4. 생략 5. 권리행사로 발생한 각종 세금, 그 밖의 부과금 등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계좌 내 원화 현금에서 우선 받으며, 원화 현금이 부족하여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받을 경우에는 각종 세금 등을 받는 날을 환전일로 하여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 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로 필요한 금액만큼 환전한다. 다만, 고객계좌 내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고객에게 10일내에 납부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권리행사) 1. ~ 4. 생략 5. 권리행사로 발생한 각종 세금, 그 밖의 부과금 등에 대하여 회사가 고객계좌 내 원화 현금에서 우선 받으며, 원화 현금이 부족하여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받을 경우에는 각종 세금 등을 받는 날을 환전일로 하여 외화예금계정이 개설된 외국환은행 이 고시한 대고객 전신환매매 현물환율을 기준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은행이 협의·결정한 환율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여 제시한 환율로 필요한 금액만큼 환전한다. 다만, 고객계좌 내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 고객에게 10일내에 납부할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그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처리한다.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9조(통지) ① ~ ② 생략 <신 설>	제10조(통지) ① ~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객 통지를 위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였으나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외국보관기관이 외화증권의 권리행사 관련 사항의 전달을 지연한 경우,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외국보관기관의 통지 지연으로 인하여 고객에 대한 통지가	해외주식 권리관련 통보 유의 사항 추가

	연쇄적으로 지연됨에 관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0조(예약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 ④ 생략 ⑤ 회사는 예약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제11조(예약금 이용료의 지급 등) ① ~ ④ 생략 ⑤ 회사는 예약금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11조(수수료) ① ~ ② 생략	제12조(수수료) ① ~ ②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12조(고객 신고사항) ① ~ ② 생략	제13조(고객 신고사항) ① ~ ②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13조(약관변경 및 계약해지) ① ~ ⑥ 생략	제14조(약관변경 및 계약해지) ① ~ ⑥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14조(면책) 1. ~ 2. 생략	제15조(면책) 1. ~ 2.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15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 ② 생략	제16조(계좌의 통합 및 폐쇄) ① ~ ②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16조(투자유의사항 등) 1. ~ 2. 생략	제17조(투자유의사항 등) 1. ~ 2.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17조(양도 또는 질권설정) (생략)	제18조(양도 또는 질권설정)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18조(거래제한) ① ~ ② 생략	제19조(거래제한) ① ~ ②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19조(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 고지) (생략)	제20조(일중매매거래관련 위험 고지)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20조(관계법규등 준수) (생략)	제21조(관계법규등 준수) (생략)	3조 신설로

제21조(분쟁조정) (생략)	제22조(분쟁조정) (생략)	번호 변경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22조(관할법원) (생략)	제23조(관할법원)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제23조(기타) ① ~ ② 생략	제24조(기타) ① ~ ② 생략	3조 신설로 번호 변경																				
<p>〈별첨〉</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1. 제4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체율 연 11%</li> <li>※ 보통년은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li> </ul> <p>2. 제11조제1항의 “〈별 첨〉에서 정하는” 위탁의 중개 등의 수수료 및 유관기관 수수료</p> <p>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의 홈페이지(고객센터 &gt;&gt; 업무안내 &gt;&gt; 수수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li> </ul> <p>3. 기타 특약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사항 없음</li> </ul>	<p>〈별첨〉</p> <p>1. 제3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위탁증거금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거금유형별 매수 시 위탁증거금율(해외주식)</li> </ul> <table border="1" data-bbox="1095 627 1964 1187"> <thead> <tr> <th rowspan="5">증거금유형</th> <th rowspan="5">종목별 증거금</th> <th>종목별 증거금율</th> <th>현금/재사용 증거금율</th> </tr> </thead> <tbody> <tr> <td>30%</td> <td>30%</td> </tr> <tr> <td>40%</td> <td>40%</td> </tr> <tr> <td>50%</td> <td>50%</td> </tr> <tr> <td>100%</td> <td>100%</td> </tr> <tr> <th rowspan="5">100% 증거금</th> <th>종목별 증거금율</th> <th>현금/재사용 증거금율</th> </tr> <tr> <td>30%</td> <td rowspan="4">100%</td> </tr> <tr> <td>40%</td> </tr> <tr> <td>50%</td> </tr> <tr> <td>100%</td> </tr> </tbody> </table> <p>2.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임의처분할 수 있는 증권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대매매수량 = 미수금(결제일까지의 이자포함) / 수량산정기준가격</li> </ul>	증거금유형	종목별 증거금	종목별 증거금율	현금/재사용 증거금율	30%	30%	40%	40%	50%	50%	100%	100%	100% 증거금	종목별 증거금율	현금/재사용 증거금율	30%	100%	40%	50%	100%	<p>해외주식 미수거래 서비스 신규 도입에 따른 증거금 관련 내용 추가,</p> <p>해외주식 미수거래 및 통합증거금 도입에 따른 반대매매 대상 수량 및 가격에 대한 설명 내용 추가,</p> <p>별첨 1~3/ 3조 신설로</p>
증거금유형	종목별 증거금			종목별 증거금율	현금/재사용 증거금율																	
				30%	30%																	
				40%	40%																	
				50%	50%																	
		100%	100%																			
100% 증거금	종목별 증거금율	현금/재사용 증거금율																				
	30%	100%																				
	40%																					
	50%																					
	100%																					

	<p>- 수량산정기준가격은 전일종가(최근일종가)의 -15%로 할인하여 산정</p> <p>3. 제5조제1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그 밖의 증권의 처분 순서는 다음과 같다.</p> <p>1) 외화 미수 발생 시 : 해당시장 현금주식만 반대매매 종목으로 선정</p> <p>- 미수발생 당해종목 → 최근 매입종목 → 종목번호 빠른 순(또는 알파벳 순)</p> <p>2) 통합증거금 신청 계좌에서 미수 발생 시 : 현금주식만 반대매매 종목으로 선정</p> <p>- 미수발생 당해종목 → 미수발생 시장종목 → 개장시간 빠른 시장종목</p> <p>- 국가별 반대매매 순서 : 국내 → 홍콩 → 중국 → 미국</p> <p>※ 시장별 반대매매 순서는 위 ‘1) 외화 미수 발생 시’와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p> <p>4. 제5조제3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요율은 다음과 같다.</p> <p>- 연체율 연 11%</p> <p>※ <u>보통년은 365일 (윤년의 경우 366일)</u></p> <p>5. 제12조제1항의 “〈별 첨〉에서 정하는” 위탁의 중개 등의 <u>수수료 및 유관기관 수수료</u>는 다음과 같다.</p> <p>- 회사의 홈페이지(고객센터 &gt;&gt; 업무안내 &gt;&gt; 수수료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6. 기타 특약사항</p>	<p>번호 변경,</p> <p>해외주식 거래가능 대상에 따른 유의사항과 해외 권리와 결제 이슈에 대한 유의 사항 추가,</p> <p>선반영 관련 내용과 유의사항 추가</p>
--	---	--

- |  |   |  |
|--|---|--|
|  | <p>1) CDD 수행, CRS/FATCA 이상징후 등록 확인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따를 때 고객의 국적이 미국 혹은 캐나다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모든 외화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미국납세의무자로 추정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미국에서 발행된 외화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p> <p>2) 현지 수탁사, 거래소, 위탁원, 은행 및 데이터 제공사 및 국내외 통신사 등의 책임 또는 천재지변, 공휴일, 전쟁, 테러, 사변, 그 외 이와 유사한 사유로 주문, 결제, 시세 등에 관하여 조회, 전달, 체결의 지연 또는 불능, 그 밖의 거래의 불편, 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p> <p>3) 현지 보관기관 및 현지 브로커, 한국예탁결제원의 사정에 따라 결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장외시장(OTC) 주문의 경우 해외 결제 참여 기관 사정으로 결제 지연 및 혹은 (주문)체결 취소가 될 수 있다.</p> <p>4) ETP를 포함한 미국주식의 권리(액면병합, 액면분할), SPAC 합병 및 기타 권리 발생 시 한국예탁결제원 및 블룸버그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신뢰할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가 위탁원과 최종 확인을 거친 미국주식에 한하여 위탁자 계좌부에 동 주식의 권리가 반영되기 전에 고객의 투자자 계좌부에 해외주식의 수량 변경(이하 "선반영")을 반영할 수 있다.</p> <p>5) 선반영 효력 발생 후 고객의 잔고 수량에 기반한 매매는 가능하나, 회사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정한 날짜까지 타사 대체 입고 및 출고가 제한될 수 있고, 대출 및 미수, 신용거래 등 기타 서비스 이용도 제한될 수 있다. 선반영을 진행하는 주식에 관한 미결제 수량이 있는 경우에는 동 수량을 모두 결제 완료한 이후 출고 가능할 수 있다.</p> |  |
|--|---|--|

6) 일반적으로 결제잔고 기반으로 선반영을 진행하기에 체결기준 잔고와 수량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미결제잔고의 수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실제 예탁원 결제부에 권리 반영이 완료된 이후 단수주 매도대금기준으로 지급한다.

7) 선반영 진행 중 예탁자 계좌부에 고객의 잔고 수량이 정상적으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잔고 수량 반영 지연으로 고객 보유 주식에 대한 매매가 지연될 수 있다. 예탁자 계좌부의 잔고 수량 반영 지연으로 인한 거래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거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8) 선반영으로 인하여 사고 또는 오류가 발생하여 투자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지만, 예탁원과 블룸버그 등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주의에 따라 선반영을 하였으나, 처리 시점에서 변동되는 정보는 회사가 예측 및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미국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현지의 결제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반영과 관련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9) 또한 회사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였으나, 미국주식 권리에 관한 사항을 예탁원 또는 블룸버그 등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한 경우나 예탁원 또는 블룸버그 등이 제공한 정보가 불일치하여 미국주식 권리에 관한 사항을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0) 선반영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선반영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고객 보유 주식에 대한 권리 반영 전까지 매도가 제한되는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이와 같은 매도 제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	--